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개정

調査部

1. 사유

식품위생법 제23조의 3(영업허가의 제한) 제4호(공익상 또는 식품첨가물의 수급조절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)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(고시 제82-46호, '82.7.27)을 개정하여 허가제한 대상업종의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므로서 허가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(보건사회부고시 제82-25, '82.5.22)으로서 동 업종을 합병한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- 보존음료수의 경우 주한외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.
- 다류제조영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품질향상을 기함.

보건사회부고시 제84-38호(1984.5.28)

보건사회부고시 제82-46호 "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"(82.7.27)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.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

제1조(허가기준 적용업종)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

제4호의 적용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.

- 과자류 제조업(떡류는 제외한다)
- 어육연제품 제조업
- 다류 제조업
- 장류 제조업
- 두부류 제조업
- 보존음료수 제조업

제2조(적용제외대상) 제1조 각호의 적용대상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보건사회부 고시 제82-25호 ('82.5.22)에 의거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으로서 당해 영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1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자체실험실을 설치하는 경우.
- 두부류 제조업으로서 1종식품 위생관리인을 두고 시설이 마쇄과정으로부터 응고과정까지 자동기체화 되어 있고, 두부 칡수용 냉각수(3°C ~ 5°C) 제조시설, 두부보관용 냉장시설 및 운반상자 증기소독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, 다만, 도서지역으로써 도지사가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에 의할 수 있다.
- 다류제조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,
 - 작업장의 원료처리실, 제조가공장, 포장실 및 실험실은 콘크리트내벽으로 별도 구획되어 바닥으로부터 1.5m까지는 밝은색 계통의 타

- 일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2) 작업장의 출입구, 원료처리장, 제조가공장, 포장실 및 실험실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각각 수도관으로 연결된 고정 적인 손 쟁는 시설(60cm×50cm 이상)을 갖추어 항상 사용할 수 있고, 사용후 베려지는 물은 방취시설이 된 배관을 통하여 하수도로 빠져 나가도록 설비되어야 한다.
 - 3) 제조가공장에는 원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자동배합기를 갖추어야 하며 포장실에는 생산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를 갖추어야 한다.
 - 4) 벤소는 경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서 바닥과 내벽의 1.5m까지는 타일을 부착하여야 하며, 수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 쟁는 시설(60cm×50cm 이상)을 갖추어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 - 5) 경의실에서는 종업원 개개인의 의복과 휴대물을 둘 수 있는 위생적인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6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1인 이상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.
 - (1) 1급위생사, 1급위생시험사, 1급식품제조가공기사
 - (2) 대학에서 약학, 식품가공학,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.
 - (3) 외국에서 (1)~(2)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.
- 7) 실험실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, 식품·첨가물의 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(소분업, 접유업, 유처리업을 포함한다)의 시설기준 마. 겸사시설에서 정하는 기준의에 다음의 실험기계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.
- 가) 고형 및 액상다류의 경우 : 스펙트로 토템타
- 나) 액상다류의 경우
- (1) 균질기
 - (2) 오토크레이브
 - (3) 배양기
 - (4) 무균작업장
 - (5) 세균수 계산기
 - (6) 현미경
4. 제 1조 제 6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1. 이 고시 시행이전에 접수된 다류제조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존음료수 제조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고시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행락질서 의식속에 건전한 여가생활